

수원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8864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2. 8. 31 선고 2021나88647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1. 8. 20 선고 2021가단1786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

담당변호사 김재훈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옥필

변론종결 2022. 7. 13.

판결선고 2022. 8. 31.

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1가단1786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19.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[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(원고는 이 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 없고, 원고가 원고 및 원고의 부의 각 분양권을 175,000,000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각 매도인에게 235,000,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그 차액 상당액을 피고들이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)]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욱, 판사 안좌진, 판사 이혜미